

#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1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김원태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 박영한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봉준, 이상욱, 이영실, 이종태, 이종환, 장태용, 정준호, 최민규, 홍국표, 황유정 의원(3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회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
- 서울시 산하 일부 자치구에서는 최근 들어 5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, 30년 이상 재직 시는 3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, 울산광역시와 산하 자치구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50일로 늘렸고, 전주시에서는 40년 이상 재직자 10일 휴가를 추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
- 서울시의회 근무 공무원들이 장기재직휴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일부 타시도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개선하는 사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의회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

## 2. 주요내용

가.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,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 29조제11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1항 중 “10년”을 “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, 10년”으로, “10일”을 “15일”로, “20일”을 “25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특별휴가) ① ~ ⑩ (생략)</p> <p>⑪ 의장은 재직기간이 <u>10년</u>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<u>10일</u>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<u>20일</u>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⑫ ~ ⑮ (생략)</p>	<p>제29조(특별휴가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----- <u>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, 10년 -----</u>  <u>15일</u>-----  -----  <u>25일</u>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⑫ ~ ⑮ (현행과 같음)</p>